

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기 획 예 산 담 당 관】

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안의 비용추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정부조직법」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쓰인 구 조직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5항)
- 나. 약칭 사용을 지양하고 원 명칭 사용 (안 제6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덧붙임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년 12월 26일 ~ 2017년 01월 16일(21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- 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
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행정안전부” 를 “행정자치부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주민청구 조례안의” 를 “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안·개정안 및 폐지안의” 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하남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 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 으로 한다.

부서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
	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유순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천정아 (790-528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<u>행정안전부</u>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,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행정자치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비용추계서 협의·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<u>주민청구 조례안</u>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, 하남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,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시켜야 한다.</p>	<p>제6조(비용추계서 협의·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안·개정안 및 폐지안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■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19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1.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09.4.1.>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,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·개정안 및 폐지안(이하 "주민청구조례안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., 2011.7.14.>